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5일 김미숙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10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장제비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장제비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장제비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장제비 지원예산 확보 (안 제7조)

다. 예산수반

○ 연간 추정예산액 : 500천원 × 400명 = 200,000천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정부지원 장제비 근거는?	○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
○ 집행부와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하여 협의는 하였는지?	○ 그러함.
○ 향후 장제비 지원대상자가 확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현 추세로 본다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봄.
○ 현 제도하에서 수급자에게 새로운 지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공감함. (이상 김미숙 의원)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제비”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말한다.

제3조(장제비 지원대상) 장제비는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장제비 지원기준) ① 장제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명당 50만원 지원
 2.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40만원 지원
- ② 수급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

협법」 제48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제비 신청) 장제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장제급여 신청으로 갈음한다.

제6조(장제비 지급절차) 장제비 지급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제급여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장제비 지급을 위한 비용을 추정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제482호
의결 년월일	2009. 11. 23. (제157회)

발의년월일 : 2009. 10. 5.

발 의 자 : 김미숙의원등10인

1. 제안 이유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제비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장제비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장제비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장제비 지원예산 확보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 별 첨

5. 예산수반 상황 : 2010년도 본예산 반영 조치

○ 추정예산액(연간) : 500천원 × 400명 = 200,000천원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제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제비”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매장, 그 밖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말한다.

제3조(장제비 지원대상) 장제비는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장제비 지원기준) ① 장제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명당 50만원 지원
 2.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40만원 지원
- ② 수급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

협법 제48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제비 신청) 장제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장제급여 신청으로 갈음한다.

제6조(장제비 지급절차) 장제비 지급절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제급여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장제비 지급을 위한 비용을 추정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14조 (장제급여) ①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장제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지급대상 : 차상위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 자

2.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6.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전원 요양)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전원(전원)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